

환경부 공고 제2002- 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월 14일

환경부장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하여야 할 국가 주요정책 및 계획의 범위와 검토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효율적인 자문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하여야 할 주요정책 및 계획의 종류를 정함
-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주요정책 및 계획을 확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의 검토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1 :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 504-9239, Fax : 504-9209 참조2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총괄팀장, 주소 : 서울 은평구 불광동 613-2, 전화 : 385-7600, Fax : 388-79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능)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p> <p>1.~4. (생략)</p> <p><신설></p>	<p>제2조(기능) ①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p>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검토를 받은 주요정책과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주요정책과 계획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국가 주요 중장기기본계획</p> <p>2. 제1호의 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광역개발사업계획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계획</p>

<신 설>

3. 기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된
주요정책 및 계획 등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주
요 중장기기본계획의 종류 및 검토요
청 시기는 별표1과 같다.

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 3항의 규정
에 의한 정책 및 계획을 확정함에 있
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위원장의 검토결과를 우선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1]

검토대상 국가 주요 중장기기본계획
의 종류 및 검토요청시기 (제 2조제 3항
관련)

계획의 종류	검토요청시기
1.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 30의 규정에 의한 농 어촌주거환경개 선종합계획	농어촌주택개량촉진 법시행령 제 20의 규 정에 의한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 원자력법 제 8조 의 2제 1항의 규 정에 의한 원자 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법 제 8조의 2 제 3항의 규정에 의 한 관계부처의 장 과 협의시

3. 관광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제 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시
4.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3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농정심의회 심의전
5. 농어촌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농어촌정비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시
6. 농어촌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 8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등과 협의시
7. 산림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법시립기본계획	산림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8.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p>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p>	<p>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무회의 심의전</p>
<p>1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p>	<p>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p>
<p>1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계획</p>	<p>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전</p>
<p>12.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p>	<p>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전</p>
<p>13. 전기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p>	<p>전기사업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정책심의회 심의전</p>

<p>14. 환경친화적산업 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촉 진을위한종합시책</p>	<p>환경친화적산업구 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 제3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시</p>
<p>15. 공업배치 및 공 장설립에 관한법 률 제3조의 규 정에 의한 공업 배치기본계획</p>	<p>공업배치및공장설 립에관한법률 제3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 시</p>
<p>16.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 경보전장기종합 계획</p>	<p>환경정책기본법 제 12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p>
<p>17.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 2제 1항 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중 합계획</p>	<p>환경정책기본법 제 14조의 2제 2항의 규 정에 의한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p>
<p>18.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한 환경교 육·홍보계획</p>	<p>환경정책기본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 한 계획수립시</p>

<p>19. 자연환경보전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자연환경보전 계획</p>	<p>자연환경보전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 시</p>
<p>20. 습지보전법 제 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p>	<p>습지보전법 제 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 기관이 장과 협의 시</p>
<p>21. 환경기술개발및 지원에관한법률 제 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종합 계획</p>	<p>환경기술개발및 지원에관한법률 제 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심의전</p>
<p>22. 토양환경보전법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기본계획</p>	<p>토양환경보전법 제 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 시</p>
<p>23. 자원의절약과재 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 기본계획</p>	<p>자원의절약과재 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p>

<p>24.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폐기 물 처리에 관 한 종합계획</p>	<p>폐기물관리법 제8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수립시</p>
<p>25. 유해화학물질관 리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 물질관리종합계획</p>	<p>유해화학물질관리 법 제4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관 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시</p>
<p>26. 수도법 제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 기본계획</p>	<p>수도법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관 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p>
<p>27. 지하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 리기본계획</p>	<p>지하수법 제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시</p>
<p>28. 국토건설종합계 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 국계획</p>	<p>국토건설종합계획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 건설종합계획심의 회 심의전</p>

<p>29.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급계획</p>	<p>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p>
<p>30.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p>	<p>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p>
<p>3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p>	<p>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p>
<p>32.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p>	<p>제주도개발특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p>
<p>33.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p>	<p>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p>

34. 도시계획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 계획	도시계획법 제 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5.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제 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종합계획	주택건설촉진법 제 4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전
36. 도로법 제 23조의 2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	도로법 제 23조의 2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7. 하천법 제 1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법 제 11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8.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장기 계획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 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조정위원회 심의전

<p>39. 교통체계효율화 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p>	<p>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한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 시</p>
<p>40.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 양환경보전종합 대책</p>	<p>해양오염방지법 제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 시</p>
<p>41. 해양개발기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 양개발기본계획</p>	<p>해양개발기본법시 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시</p>
<p>42.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 유수면매립기본 계획</p>	<p>공유수면매립법 제 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 시</p>
<p>43. 연안관리법 제 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계획</p>	<p>연안관리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시</p>